

#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

##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조사결과보고서

### I.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복지업무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히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그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조사기간 : 1998. 10. 28~1999. 3. 31(6개월 간)

#### 3. 조사범위

- 사회복지분야 업무추진실태 현황파악
  - 생활보호사업, 의료보호 분야
  - 가정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아동복지, 유아복지 분야
  - 장애인복지 분야, 기타 사회복지 분야
-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 사회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 경로당, 기타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운영방법 개선 및 방향제시

#### 4. 조사방법

- 자료수집 및 현황보고 청취
- 사회복지분야 업무추진사항 파악
-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현지확인
- 사회복지업무 관련단체 및 종사자와의 간담회 실시
  - 애로사항 및 업무개선사항, 건의사항 청취

#### 5. 조사반 편성 및 조사일정

##### 가. 조사반 편성

위원장	위원
류재구 의원	박종신 의원, 오효진 의원, 우재극 의원, 한병환 의원

나. 조사일정

일 정		조 사 내 용	비고
부 터	까 지		
98. 10. 28	98. 11. 15	자료수집 및 현황보고 청취	
98. 11. 1	99. 2. 28	사회복지업무 관련단체 및 종사자와의 간담회 실시	
98. 11. 2	98. 11. 22	사회복지관, 다목적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 조사 및 현지확인 점검	
98. 11. 23	99. 3. 15	경로당, 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현지확인	
98. 11. 25		소위원회 활동결과 중간 보고	
99. 2. 1		경로당 운영 개선방안 보고 청취	
99. 3. 16	99. 3. 31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II. 조사결과

1. 사회복지예산 현황

가.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총 예산액	사회복지예산	비 율 (사회복지예산/총 예산액)	비고
계	268,970,594	39,265,420	14.60%	
일반 회 계	224,714,725	29,382,207	13.08%	
특 별 회 계	44,255,869	9,883,213	22.33%	

나. 분야별

(단위 : 천원)

분야별 기관별	계	일반사	생활	가정	노인	여성	아동	유아	청소년	의료보	영세민	기 타
		회복지	보호	복지	복지	복지 (정책)	복지	복지	복지	호기금	생활안 정자금	
계	39,265,420	6,725,116	10,055,616	66,816	6,886,330	740,615	521,056	2,805,420	356,900	9,271,213	612,000	1,224,338
시분청	19,105,230	5,604,561	2,000		1,307,398	260,734	512,996	157,300	152,690	9,271,213	612,000	1,224,338
원미구	9,591,258	20,892	5,463,645	23,984	2,716,706	260,210	1,380	1,007,211	97,230			
소사구	6,949,335	1,085,875	2,955,654	32,744	1,784,654	116,751	4,340	897,517	71,800			
오정구	3,619,597	13,788	1,634,317	10,088	1,077,572	102,920	2,340	743,392	35,180			

## 2. 사회복지시설 예산집행결과

(단위 : 원)

구분 기관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계	국·도비	시 비	자부담 및사업 수 익	계	국·도비	시 비	자부담 및사업 수 익	계	국· 도비	시 비	자부담 및사업 수 익
삼정복 지회관	917,439,507		432,000,000	485,439,507	911,997,080		432,000,000	479,997,080	5,442,427			5,442,427
덕 유 사 회 복지관	242,144,620	18,000,000	96,000,000	128,144,620	242,144,620	18,000,000	96,000,000	128,144,620				
한라중 합사회 복지관	374,448,970	25,200,000	108,960,000	240,288,970	352,640,880	25,200,000	108,960,000	218,480,880	21,808,090			21,808,090
춘의중 합사회 복지관	490,930,000	25,200,000	108,960,000	356,775,000	451,064,500	25,200,000	108,960,000	316,904,500	39,870,410			39,870,410
상 동 사 회 복지관	258,829,600	18,000,000	96,000,000	144,829,600	234,715,700	18,000,000	96,000,000	120,715,700	24,113,900			24,113,900
부친중 합사회 복지관	244,477,350	25,200,000	108,960,000	110,317,350	244,477,350	25,200,000	108,960,000	110,317,350				
장애인 종 합 복지관	1,642,717,607	592,307,000	926,600,000	123,810,607	1,569,312,037	592,307,000	887,107,430	89,897,607	73,405,570		39,492,570	33,913,000
남 부 노인복 지회관	440,980,000		352,784,000	88,196,000	454,544,740		352,785,000	101,759,740				
중 부 노인복 지회관	308,211,250		318,569,000	79,642,000	384,826,806		307,856,391	76,970,415	13,384,444		10,712,609	26,671,835

3.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가. 삼정복지회관

(1) 운영실태

가) 99년 정신질환자 중점사업, 정규직 37명, 일용직 2명, 시간강사 7명, 대형복지회관으로 서울 신학대학 재단 위탁시설

나) 아동복지(현장학습, 방과 후 교육)

다) 청소년복지(집단활동, 동아리 활동 연합발표회, 자원봉사학교- 연극, 수화교실)

라) 가정복지사업 - 가족공동체 훈련, 건강강좌, 대성병원 주 1회

마) 학교사회사업(집단지도, 부모교육)

바) 노인복지사업(재활서비스, 가족모임, 프로그램조직회, 사업평가, 효도관광, 한방치료교실)

사) 주민편의사업 효율적으로 활용

수익사업 절하 - 개인사업 추진

아) 연구지 발간, 복지회관 홍보 및 관보 발간 격월 1만 부, 대형차량 운행

자) 취업정보센터 노동사무소와 인터넷 등과 연계하여 정보제공

차) 법률상담 지역변호사 2명 선임, 무료법률상담

카) 한방진료 - 한의사 지원, 이미용 서비스

타) 실직자 쉼터 - 3층, 공간 활용, 여성실직자 교육(일하는 여성) 자격 취득

파) 저렴한 사용료 회관대여(예식) 등

하) 실직자 가정아동, 고급반 아동, 무료제공

법인 전입금 1,500만원, 기부금 2,000만원

※ 수영장 수입 - 하루 1,000명 수용 가능함.

대형 복지관으로서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소각장 건립과 동시에 주민서비스차원에서 복지 회관을 건립해준 시설임.

(2) 문제점

가) 직원관리에 문제가 있어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음.

나) 대형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함.

다) 수익사업으로 수영장과 대강당 임대를 하고 있으나 수익률이 저조

※ 수영장 이용률이 1일 1,000명 가량 수용할 수 있으나 저조

대강당 의자가 평면으로 배치되어 이용률이 저조

나. 덕유사회복지관

(1) 운영실태

- 가) 지역복지사업으로 덕유시네마, 운영자문위원회 및 주민간담회, 송년잔치, 사회조사, 주민교육 및 교양강좌, 민속놀이경연대회, 덕유가족가요제 및 개관식행사, 작은설 동치나눔 실시
- 나) 청소년복지사업으로 청소년 컴퓨터교실, 길거리 농구,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상담 실시
- 다) 기타 가정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실업대책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2) 문제점

- 가) 소외 고립되기 쉬운 현대사회에서 노인에게 관심을 증대시켜 보람된 노인 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백중맞이 경로잔치가 복지관 자체 행사가 아닌 연예인 초청 등 석왕사 중심 홍보행사로 예산이 사용된 데 문제가 있음(1,000명 4,500만원)
- 나) 관장 급료를 6월까지 지급하고 중단된 점
- 다) 운영비에서 협회비를 지출함.
- 라) 연초 예산 계획 대비 수정할 부분이 다량 발생한 점
- 마)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수익사업이 많지 않은 점이 문제
- 바) 지역복지사업운영비에(민속놀이 경연대회 1,697,000원, 작은설동치나눔 1,700,000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중복된 행사 프로를 운영하고 있음.  
→ 송년잔치, 사회조사 등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통해 복지서비스 방법 모색한다.
- 사) 법인전입금에 차액이 생김 - 15,692,000원만 입금 처리  
연초 → 34,000,000원, 추경 26,000,000원

다. 한라종합사회복지관

(1) 운영실태

- 가) 보호관찰 프로그램 비용 - 150만원
- 나) 청소년 선도(탈선 학생선도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다) 원미구 지원 1억원(공동작업장 활용)
- 라) 노숙자 밀착상담 동절기 귀가조치 특색사업
- 마) 주유소 사장의 필수품(쿠폰함 설치)
- 바) 밀반찬 나누기(삼성전자 작은 나눔 한사랑) - 거택보호, 실직자
- 사) 보호관찰 청소년 : 200명
- 아) 정신질환자 상담 종합훈련시설 - 방문보건비  
미용수익사업, 영어, 글쓰기, 미술, 몬테소리교육, 청소년 학습지도

(2) 문제점

- 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필요성
- 나) 자립작업장 (직업지도자 필요)

다) 연초대비 재단전입금 → 3,600만원

후원금 → 4,363만원

※ 타사회복지관에 비하여 비교적 사업이 잘 되고 있음.

라. 춘의종합사회복지관

(1) 운영실태

가) 직업훈련 위탁교육의 특성

노동부 관련 위탁교육(미용, 피복, 제빵, 자격증 취득) 전액 무료

나) 청소년 건전문화 8개 동아리문화 활성화

다) 푸른동산, 독서실 주 30회(비행청소년 선도)

라) 추경예산 반영 자체 증액 요청

특색사업 전환(자활지원센터 : 직업알선센터, 주민협동조합, 고용 창출 훈련, 취업교육센터)

※ 6,000만원 특별지원 요청

(2) 문제점

가) 작업환경 협소, 프로그램의 확충이 앞섬

※ 증축, 확장할 수 있는 것인지? (주공 소유)

나) 전입금 보조금 - 연초대비 - 2,000만원, 후원금 - 10월말 - 3,080만원

※ 타사회복지관에 비하여 비교적 사업이 잘 되고 있음.

마. 상동사회복지관

(1) 운영실태

가) 아동복지사업으로 아동선도 및 교육, 방과후교실, 피아노교실, 시간제 탁아방 등을 운영하고 있음.

나) 청소년복지사업으로 청소년 상담, 청소년자원봉사학교, 푸른산교실 등을 실시하고 있음.

다)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목욕권배부, 경로잔치 및 노인관광 도시락배달서비스 무료한방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복지사업, 사업개발사업, 가정복지사업, 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음.

(2) 문제점

가) 운영자 전문성 결여

나) 예비비 편성 목적 외 사용(프린터 등 구입비로 6,000,000원)

다) 법인전입금 전무(월드선교회)

라) 시설운영의 효율성 결여 - 노인정, 동사무소

마) 시설물, 운영프로그램 보완 등 적극성 결여 - 사업별 운영실적 저조

바) 자원봉사자 40명(타기관 대비 적음)

사) 교양취미교실이 필요함을 느낌

아) 사회복지사 6명 프로그램 자료(활성화를 요함)

자) 복합건물로서 동사무소·노인정·복지관 증축요망, 기능분리 필요성

차) 재개발지역의 복지관으로서 전문기능확보가 필요함.

바. 부천종합사회복지관

(1) 운영실태

가) 가정복지 - 직업개발, 취업, 부업 및 기능훈련, 양재, 이·미용

나) 청소년 - 자활, 자원봉사활동 지도, 보호관찰, 인간관리

다) 재가복지 - 가사서비스, 영정제작, 물리치료, 밀반찬 지원, 복지머리방 - 직영 - 실직자 무료

라) 소사구 실직자 가정 자녀 90명 후원, 30명 쉼터 운영, 실직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219명 등  
록), 구직알선 → 취업교실 → 구인

마) 진영실고 → 청소년 교양강좌 및 인간관리 → 보호관찰

바) 노동부지정 취업자격증 - 제과, 제빵

(2) 문제점

가) 법인전입금 1,500만원 연초 전무함

※ 노후시설로서 시설보수가 시급함.

어린이집 운영 44명, 저소득층 4명

나) 복지관 홍보의 문제점 : 부천중앙 → 네트워크 구성 필요

사. 장애인종합복지관

(1) 운영실태

가) 장애인 전담시설로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관계로 전문적인 예산편성에 따른 작업이 필요함.

불필요한 예산은 지양하는 계획이 수립됨을 엿볼 수가 있음.

나) 순회 재활서비스와 공동작업장, 장애전담 치료서비스와 관련 사업장이 많은 시설임.

다) 수익사업은 없는 시설임.

라) 장애공동작업장 자활능력 기여에 노력함이 보임.

(2) 문제점

가)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 특수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세심한 진단이 필요함.

나) 장애공동작업장 자활능력 기여에 노력함이 보임. 수익보다 자활능력 확충

아. 남부노인복지회관

(1) 운영실태

- 가) 사회교육사업으로는 노인대학, 노인서클(신나는봉사단, 즐거운합창단 등), 노인교실(영화교실, 영어교육, 단전호흡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나) 치매노인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주간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알선센터, 의료서비스,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재가복지사업 공동작업장 등을 운영하고 있음.

(2) 문제점

- 가) 법인 전입예상 - 3,600  
     순보조        - 3,750(추가)  
     인건비 차액   - 197만원(관장 인건비)
- 나) 치매노인 상담 및 치료시설 개선  
     원인 : 보건소 건물 이용관계로 시설 변형을 요구함.
- 다) 공동작업장 부업 저조(작업장 확보 부족)
- 라) 건강관리 프로그램 실적 저조  
     시간 조정이 잘못됨. 타프로그램과 중복된 관계로 이용자 저조
- 마) 보건소, 복지회관, 재가복지 수혜자 중복 이중등록자 발생
- 바) 유급 미용사 월 50만원의 지급은 부당함. 자원봉사자로 대체함이 바람직함.  
     ※ 중부노인복지회관은 계획만 있음(채용하지 않음)
- 사) 개선점 필요  
     보건소 → 노인복지회관 → 동사무소 연결망을 설치하여 재가대상자 선정과 파악을 철저히  
     중복된 수혜자를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 중부노인복지회관

(1) 운영실태

- 가) 주요사업으로는 취업알선을 위한 단기직업훈련 및 취업연결 등의 사업과 여가취미활동을 위  
     한 장수대학, 장수교실, 클럽활동, 테마여행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 나) 치매, 중풍노인을 낮동안 보호 및 재활훈련을 위한 주간보호소를 운영하고 있고, 요보호노인  
     의 숙식보호, 생활체육보급, 이·미용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음.  
     ※ 예산절감노력 : 미용실 예산(자원봉사요원으로 대체) 등  
     프로그램 장점 : 단기보호시설(치매노인 4명, 중풍노인 11명) 직원 4명  
     ※ 요구사항 : 옥탑 가건물 설치 요망

(2) 문제점

- 가) 예산전용  
     예) 업무협의회 100,000원×12 = 1,200,000 - 1,650,000원으로 증액



자문위원회 150,000원×4 = 600,000 - 450,000(1회로)

나) 예산납용

예) 회의비(사회복지협의회 식비) - 180,350, 연회비 등 납부(200,000) 외 지출  
노인정 : 양말, 음료수 제공, 기공체조(노인 등) 9,000,000

다) 사업계획의 일방적 변경

예) 주재캠프 1,000,000원을 없애고  
테마여행 1,200,000원 2회를 8회 4,650,000원 등으로

라) 자산취득변경

예) 연초 대비 임의 변경으로 타당성 유무 심의 불가(목변경·태만)

마) 자원봉사자 예산대비 사업 타당성 결여

예) 연초 7,700,000원 - 계획 3,900,000원 - 지출, 목변경

바) 공동작업장 운영부실

- 1일 1,500명 이용 중, 6명(한시적일 뿐) 시행

사) 법인전입금 연초계획 없고 10,000,000원 행사지원뿐임.

아) 운동장 없으므로 환경 열악

차. 조사의견

(1) 법인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 사회복지관 및 복지회관의 사업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업실적이 부진한 법인에 대하여는 추후 재위탁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2) 연초 사업계획 심의 철저 요망

- 다음연도 예산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심의시 사업내용과 전년도 사업실적을 비교분석하고 지원액을 결정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3) 사업(목 예산) 변경시 심의제도 필요

- 당해연도 사업추진시 사업변경을 자체적으로 임의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심의제도가 필요함.

(4) 중복사업에 대한 통제기관 필요

-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중복해서 추진하고 있는 바 낭비적인 중복사업의 경우에는 통제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5) 위탁법인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 요망

- 각 위탁법인에 대하여 실무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지도점검이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으니 감사담당관실과 협조하여 2~3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할 것으로 판단됨

(6)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실무교육 실시

- 각 위탁법인의 회계담당자가 아직도 지방재정법이나 부천시재무회계규칙에 대한 완벽한 숙지가 부족하고 회계실무처리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7) 사회복지관의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한 건립 필요

- 사회복지관 및 다목적복지회관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구별,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립해야 할 것임.

4. 경로당

가. 그 동안의 경로당 확충 현황

○ 노인인구 \_\_\_\_\_ 33,662명

○ 경로당수 \_\_\_\_\_ 260개소(시 소유 99, 개인 및 공동 161)

※ 타시와의 비교

(단위 : 개소, 명)

구분 \ 시명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경로당 개소수	260	251	259	169
노인인구	33,662	35,211	44,296	27,216
경로당 노인인구밀도	130	140	171	161

○ 92. 이후 경로당 확충 현황

(경로당 등록/진물수)

연도별 구분	계	92.	93.	94.	95.	96.	97.
등록/시건립	69/47	4/4	4/4	13/9	22/11	11/7	15/12
소요예산 (백만원)	9,321	466	478	1,203	2,858	1,853	2,463

※ 경로당 증가요인

○ 노인인구의 증가 및 아파트 신축 등에 의한 자연적 증가

- 노인인구 매년 1,500명 증가 추세(노인인구 대비 4.4%)
- 100세대 이상 주택건설지역 의무적 경로당 설치(주택건설촉진법)

○ 시의원 선거공약, 노인들간의 불화 등으로 질적인 면보다 양적 증가

나. 경로당 시설 및 등록현황 분석

○ 경로당간 거리

- 경로당간의 거리는 보통 노인이 10분 정도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최단 거리인 300m가 적당하  
나
- 300m 미만 거리의 경로당이 전체 경로당의 53.2%인 115개소로 기존 경로당 현황과 지역적 안  
배 등을 고려한 확충 개선이 요구됨

(단위 : 개소)

구 분	계	50m 이내	50m 이상 100m 미만	100m 이상 150m 미만	150m 이상 250m 미만	250m 이상 300m 미만	300m 이상 500m 미만	500m 이상
계	260	5	12	27	64	27	70	55
일반주거지역	155	3	2	11	32	18	39	50
아파트지역	105	2	10	16	32	9	31	5

○ 경로당 등록현황

- 이용정원 20인 이상, 시설면적 20㎡ 이상의 등록된 경로당은 총 260개소로 연간 440,504천원의  
운영비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 동일 건물 내 2개소 이상 등록된 경로당이 전체의 34.22%인 89개소로 등록 경로당별 지원에  
따른 예산 과다소요와 타경로당과의 형평성의 문제, 무분별한 경로당 난립 등이 우려되며
- 동일 건물 내 2개 이상 등록된 경로당 통폐합시 연간 운영비 57,072천원과 난방비 14,680천원  
등 총 71,750천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됨

(단위 : 개소)

구분 \ 구별	계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계	44	6	14	24
2개소 등록	43	5	14	24
3개소 등록	1	1		

○ 동별 경로당, 노인인구 비교

- 동별 경로당수는 고강본동 등 5개동이 12~15개소, 원미1동 등 5개동이 2~4개소로 동간 격차가 크며, 경로당수가 많은 5개동 중 중2동 등 4개동은 아파트 건축시 의무적 시설로 건립된 것이나
- 성곡동은 13개소 중 11개소가 시에서 건립한 것으로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 면적이 원미1동(0.04평)의 4.8배인 0.19평으로 노인인구수를 고려한 지역간 균형배치가 필요함

<경로당수가 많은 동>

구분 동명	노인인구 (A)	경로당수 (B)	면적 (C)	수용비 (D=A/B)	면적비 (E=A/C)
고강본동	1,365명	15개소	131.06평	91명	0.10평
괴안동	1,128명	14개소	216.68평	80명	0.19평
성곡동	1,509명	13개소	291.70평	116명	0.19평
송내1동	1,121명	12개소	180.83평	93명	0.16평
중2동	1,365명	12개소	360.54평	113명	0.26평

<경로당수가 적은 동>

구분 동명	노인인구 (A)	경로당수 (B)	면적 (C)	수용비 (D=A/B)	면적비 (E=A/C)
원미1동	668명	2개소	24.5평	334명	0.04평
소사동	704명	2개소	39.63평	352명	0.06평
심곡3동	652명	3개소	73.53평	217명	0.11평
심곡본1동	848명	4개소	148.79평	212명	0.16평
소사본1동	754명	4개소	79.32평	188명	0.11평

※ 원미1동 - 시 건립 경로당 전무함

○ 경로당 면적별 현황

- 향후 경로당 확충시 개소별 면적기준은 경로당 평균회원수와 평균평수, 임대 확충시의 적정면적 등을 고려하여 40평 이상을 적용

구 분 (A)	계	10평 미만	10평 이상 20평 미만	20평 이상 30평 미만	30평 이상 40평 미만	40평 이상 50평 미만	50평 이상 60평 미만	60평 이상 70평 미만	70평 이상 80평 미만	80평 이상 90평 미만	90평 이상
경로당수 (B)	260	59	82	55	36	15	4	3	2	2	2
회원수 (C)	10,853	2,092	2,994	2,315	1,890	817	162	199	134	85	165
평균인원 D=C/B	52	35	37	42	53	54	41	66	67	43	83
평균평형 E=A/D	0.9	0.28	0.54	0.71	0.67	0.92	1.46	1.06	1.19	2.09	1.08

다. 조사의견(경로당 확충 개선방안)

○ 경로당 확충시 동별 노인인구 및 기존 경로당수 등을 고려하되 경로당간의 거리제한 적용

• 노인인구 1인당 경로당 평균면적(0.17평) 이하인 동에 대하여 확충 추진

※ 평균면적 이하인 동의 필요면적

평형별 계	6평 이하	10평 이상 25평 이하	30평 이상 40평 미만	45평 이상 60평 이하	60평 이상 75평 이하	80평 이상 99평 이하	100평 이상
19개 동	4	3	3	3	2	3	1

- 40평 미만 면적 미달 동은 신규확충 금지 → 기존경로당 면적 보완 추진

- 40평 이상 80평 미만 면적 미달 동은 1개만 신규확충

→ 나머지 미달분에 대하여는 기존경로당 면적 보완

- 80평 이상 면적 미달동은 2개만 신규확충 → 나머지 미달분에 대하여는 기존경로당 면적 보완

• 경로당수 제한 : 경로당 10개소 이상 동의 경우 확충 제외

• 경로당간 거리 : 최소 300m 이상

○ 지역 여건상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로 전환

• 임대건물 확보기준

- 대상건물 : 근린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노후 건물 및 무허가 제외)

• 건물규모 : 연건평 40평 이상

- 방, 거실, 화장실, 주방, 급수시설, 전기시설 등이 갖추어진 곳

- 현관문 : 남, 여 구분 설치
- 임대기간 : 임대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불가할 경우 2년 이상
- 채권확보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 전세권 설정 : 토지 및 건물
- 경로당 통·폐합 추진
  - 동일 건물 내 2개 이상 경로당
    - 대상 : 44개소
    - 추진방법
      - 1단계 : 통·폐합 분위기 조성(99. 1월~3월)
        - 경로당별 통·폐합 협조문 발송
        - 통·폐합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설득
      - 2단계 : 통·폐합 미이행 경로당에 대한 재차 설득(99. 4월~6월)
      - 3단계 : 운영, 난방비 반액 삭감 조치(99. 7월부터)
    - ※ 99년부터 1개 건물에 1개 이상 경로당 등록 지양
  - 경로당 거리 및 면적에 의한 통·폐합
    - 통·폐합 시기 : 99년중
    - 대상
      - 경로당간 거리 : 300m 이내의 경로당
      - 면적 : 10평 미만 경로당
    - ※ 공동주택 내 의무적 경로당 설치 시설 제외
  - 대상 경로당

일련번호	경로당명	위 치	소유별	평수	회원수
1	친선경로당	원미구 상동 241-13	부천시	9.9	60
2	신상리노인정	원미구 상1동 24-2	개 인	9.9	33
3	정다운노인정	원미구 상1동 24-7	개 인	5.9	44
4	소사본2동3분회	소사구 소사본2동 56-5	개 인	4.9	35

• 통·폐합 방법

- 친선경로당 폐지 ⇒ 건강경로당(원미구 상동 295)으로 통합
- 신상리노인정, 정다운노인정은 상동택지개발로 인하여 자연 폐지
- 소사본2동3분회 폐지 ⇒ 중앙노인회(소사구 소사본2동 62-17)로 통합

○ 기이 수립된 중장기계획은 변경 추진하되 주민요구 및 우선 순위에 의거 확충 추진

○ 기간 : 97~99년 → 97~2000년

○ 대상 : 15개소 → 7개소

○ 추진방법 : 신축, 매입 → 지역여건상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임대 원칙

○ 소요예산 : 4,065백만원 → 414백만원

※ 조정시 3,651백만원의 예산 절감

〈경로당 확충 순위〉

○ 1순위 : 노인인구 1인 경로당 평균면적 0.17평 이하인 동 중 필요면적 40평 이상인 동으로 신규로 경로당 확충이 필요한 곳

○ 2순위 : 노인인구 1인 경로당 평균면적 0.17평 이하인 동 중 필요면적 10평 이상 40평 이하인 동으로 기존경로당 면적이 보완되어야 하는 곳

○ 3순위 : 노인인구 1인 경로당 평균면적 0.17평 이하인 동 중 필요면적 10평 이하인 동으로 기존 경로당 면적이 보완되어야 하는 곳

※ 경로당 확충 중장기계획 재조정 방향 : 별첨

경로당 확충 중장기계획 재조정 방향

연 번	사업시기 변 경	명칭	당 초		변 경		제 외 사유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비	
계				4,064,755		413,713	
1	98.→99.	원미1동경로당	건물매입	250,000	건물임대 연건평 : 45평	60,000	
2	98.→99.	심곡2동경로당	건물매입	250,000	건물임대 연건평 : 45평	60,000	

3	98.→00.	춘의동제3분회	건물매입	250,000	건물임대 연건평 : 45평	60,000	
4	98.→99.	심곡본1동제1분회	건물매입	300,000	건물임대 연건평 : 45평	60,000	
5	98.	소사본2동제3분회	건물매입	300,000	제 외		노인 1인 경로당 면적 0.28평으로 확충 제외
6	98.→99.	송내2동1분회	건물신축	250,000	증 축	64,630	
7	98.	원중1동1분회	건물신축	256,788	제 외		노인 1인 경로당 면적 0.18평으로 확충 제외
8	98.	강장골노인회 (고강본동)	건물임대	300,000	제 외		노인 1인 경로당 면적 0.19평으로 확충 제외
9	98.→99.	대장6통경로당	건물신축	300,000	건물신축	173,713	
10	99.→00.	소사동경로당	건물매입	250,000	건물임대	60,000	
11	99.	약대7통경로당	건물신축	250,000	제 외		노인 1인 경로당 면적 0.21평으로 확충 제외
12	99.	친선경로당(상1동)	건물신축	250,000	제 외		노인 1인 경로당 면적 0.26평으로 확충 제외
13	99.	대장7통경로당	건물신축	394,500	제 외		대장6통 경로당 신축시 합병 추진
14	99.	삼부경로당 (원중1동)	건물신축	384,500	제 외		노인 1인 경로당 면적 0.18평으로 확충 제외
15	신 규	고강제1분회	건물임대	80,755	제 외		노인 1인 경로당 면적 0.19평으로 확충 제외



## 5. 보육시설

## 가. 보육시설 현황(98년도)

구분 \ 구별	계	시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비고
계	386	14	27	221	122	2	
원미구	174	3	14	92	63	2	
소사구	115	6	9	73	27	0	
오정구	97	5	4	56	32	0	

## 나. 보육시설 지원내역(98년도)

## 1) 정부지원시설

○ 대상 : 41개소(시립 14, 법인 27개소)

○ 지원액 : 1,479,884천원

## ○ 지원내역

• 시설별 지원 : 1,278,553천원

※ 종사자 인건비임

• 교재교구비지원 : 31,358천원

※ 개소당 400천원

• 종사자특근수당 : 169,973천원

※ 1급 100천원, 2급 50천원

## 2) 민간·가정보육시설

○ 대상 : 351개소

○ 지원액 : 105,300천원

## ○ 지원내역

• 교재교구비 : 개소당 300천원

## 다. 조사의견

○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 마련이 필요함

○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되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가정보육시설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음

○ 운영이 어려운 민간·가정보육시설을 시에서 매입하여 민간위탁을 하든가 하여 부실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함.

## Ⅲ. 참고자료

## 1. 주요 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

1998. 12. 31 현재

시 설 명	소 재 지	대지 (평)	건물 (평)	건립 연도	수용 및 이용인원	위 탁 법 인
삼정복지회관	삼정동 365-2	841	1,282	97.	25,000명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
덕유사회복지관	중동 1040	174	238	95.	12,000명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
한라종합사회복지관	중동 1028	450	336	95.	18,000명	학교법인 카톨릭학원
춘의종합사회복지관	춘의동 237	502	377	92.	18,000명	학교법인 카톨릭학원
상동사회복지관	상동 318-1	242	222	86.	12,000명	재단법인 월드선교회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소사본2동 101-142	250	456	90.	15,000명	사회복지법인 선의은행중앙회
장애인종합복지관	작동 57	1,009	748	91.	18,000명	재단법인
장애인복지관분관	소사동 산2-5	(200)	(120)	95.	(25명)	천주교성가회
장애인재활작업장	상동 242-8	(160)	(160)	95.	(45명)	유지재단
남부노인복지회관	괴안동 72	424	618	88.	80,000명	부천 YMCA
중부노인복지회관	여월동 10-46	255	353	93.	80,000명	재단법인기독교대한감리 회유지재단(기독교회)

2. 동별 인구, 면적, 경로당 현황

(단위 : 명, 평, 개소)

구·동별	구 분	인구수	경로당 면 적	노 인 인 구	경로당 등록수(건물수)				노인인구/ 경로당수
					계	시건립	아파트	개인	
합 계		780,131	5,952	33,662	260(216)	103(70)	118(113)	39(33)	129
원 미 구	소 계	389,183	3,159.25	16,500	111(106)	34(30)	62(62)	15(14)	148
	심곡 1동	14,304	89.93	546	3(3)	3(3)			182
	심곡 2동	14,329	102.9	722	3(3)	3(3)			240
	심곡 3동	15,925	73.53	652	3(3)	3(3)			217
	원미 1동	18,000	24.5	668	2(1)			2(1)	334
	원미 2동	15,524	116.57	716	5(4)	3(2)	1(1)	1(1)	143
	소사동	11,780	39.63	704	2(2)	1(1)		1(1)	352
	역곡 1동	17,038	100.54	941	5(5)	1(1)	2(2)	2(2)	188
	역곡 2동	17,232	57.24	912	4(4)	1(1)	3(3)		228
	춘의동	18,190	101.64	896	6(6)	2(2)	2(2)	2(2)	149
	도당동	26,479	122.04	901	6(6)	4(4)	1(1)	1(1)	150
	약대동	17,360	142.27	658	8(8)		4(4)	4(4)	82
	중동	28,414	217.23	1,060	8(5)	7(4)	1(1)		132
	중 1동	35,008	443.07	1,280	11(11)		11(11)		116
	중 2동	28,501	360.54	1,365	12(12)	1(1)	11(11)		113
	중 3동	28,195	377.59	1,070	9(9)	1(1)	8(8)		118
	중 4동	27,221	264.82	1,178	8(8)		8(8)		392
	상동	23,113	202.64	980	7(7)	4(4)	3(3)		140
상 1동	32,570	322.57	1,224	9(9)		7(7)	2(2)	136	
소 사 구	소 계	205,655	1,622.13	9,745	77(62)	31(19)	31(30)	15(13)	126
	심곡본1동	20,950	138.79	848	4(2)	4(2)			212
	심곡본동	21,093	139.57	1,042	7(4)	2(1)	3(2)	2(1)	148
	소사본1동	17,286	79.32	754	4(2)	2(1)		2(1)	188
	소사본2동	10,352	150.9	531	6(4)	4(2)	1(1)	1(1)	88
	소사본3동	31,423	225.61	1,314	10(9)	3(2)	5(5)	2(2)	131
	범박동	8,493	162.44	813	5(5)	1(1)		4(4)	162
	괴안동	25,522	216.68	1,128	14(12)	4(2)	10(10)		80
	역곡 3동	23,904	192.91	1,279	5(5)	4(4)	1(1)		255
	송내 1동	24,004	180.83	1,121	12(11)	2(1)	6(6)	4(4)	93
송내 2동	22,628	235.08	915	10(8)	5(3)	5(5)		91	
오 정 구	소 계	185,293	1,070.12	7,417	72(48)	38(21)	25(21)	9(6)	103
	성곡동	37,019	291.7	1,509	13(8)	11(6)	2(2)		116
	원종 1동	23,846	196.97	1,078	11(8)	7(4)	3(3)	1(1)	98
	원종 2동	28,746	96.44	956	7(7)	1(1)	6(6)		136
	고강본동	33,355	131.06	1,365	15(10)	4(2)	9(7)	2(1)	91
	고강 1동	17,600	157.69	836	7(4)	4(2)	3(2)		119
	오정동	21,109	82	917	9(6)	5(3)	2(1)	2(2)	101
신흥동	23,618	114.26	756	10(5)	6(3)		4(2)	75	

3. 구별 보육시설 현황

1998. 12. 31 현재

구분		합 계	사 립	법 인	민 간	가 정	직 장	비 고 (장애아동등록수)
구·동별								
합 계								
원 미 구	소 계	174	3	14	92	63	2	53(37)
	심곡 1동	8			7	1		1(0)
	심곡 2동	4		2	1	1		1(0)
	심곡 3동	9			6	3		3(2)
	원미 1동	7			6	1		2(0)
	원미 2동	13		2	9	2		3(5)
	소사동	6		1	3	2		1(2)
	역곡 1동	10	1		7	2		1(0)
	역곡 2동	7	1	1	3	2		1(1)
	춘의동	6		2	4			8(11)
	도당동	13			12	1		5(1)
	약대동	10		2	5	3		4(4)
	중동	11			8	2	1	4(0)
	중 1동	18			3	14	1	3(2)
	중 2동	10				10		4(1)
	중 3동	11		2	5	4		0(3)
	중 4동	12		1	5	6		4(2)
	상동	9	1	1	5	2		3(2)
	상 1동	10			3	7		5(1)
소 사 구	소 계	115	6	9	73	27		27(49)
	심곡본1동	15	1	2	10	1		6(13)
	심곡본동	7	0	1	3	3		3(31)
	소사본1동	8	1	0	5	2		4(5)
	소사본2동	7	1	1	3	2		2
	소사본3동	19	0	0	15	4		2
	범박동	3	1	0	1	1		0
	피안동	13	1	0	7	5		3
	역곡 3동	15	1	3	8	3		4
	송내 1동	16	0	2	9	5		1
송내 2동	13	0	0	12	1		2	
오 정 구	소 계	97	5	4	56	32		80(18)
	성곡동	8		1	5	2		7(2)
	원종 1동	11	1		6	4		5(1)
	원종 2동	17			11	6		18(3)
	고강본동	30	1	1	15	13		19(3)
	고강 1동	11	1		5	5		2(1)
	오정동	6	2		3	1		24(5)
신흥동	14		2	11	1		5(3)	

\* ( )는 입소장애아동수임